2022학년도

큰마루(大亭)에서 영글어가는

대정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전주대정초등학교

차 례

Ⅰ. 학교 상징 ····· 1

Ⅱ. 학교 현황 ····· 2

Ⅲ. 대정교육의 체계 ····· 3

Ⅳ. 연간 수업 일수 ····· 4

Ⅴ. 교육과정 운영 ····· 6

1.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 ····· 6
2. 학년군 교과 시수 ····· 6
3. 교과 평가 계획 ····· 8
4. 도서관 운영 계획 ····· 9
5.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10
6. 돌봄교실 운영 계획 ····· 11
7. 학부모회 조직 운영 계획 ····· 12
8. 출결 규정 안내 ····· 13

학부모 연수 자료

1. 생활교육 연수 ····· 19
2.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연수 ····· 31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 연수 ····· 33
4.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청렴 교육 연수 ····· 35
5. 저작권 교육 연수 ····· 39
6. 정보통신 윤리교육 연수 ····· 40
7. 보건교육 연수 ····· 41

Ⅰ. 학교 상징

우리학교 마크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창의인, 도덕인, 건강인,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느티나무 나뭇잎에 형상화하고 꿈과 목표를 향해 꿈을 가꾸어가는 어린이가 되라는 의미
우리 학교 나무 (느티나무)	어려서는 볼품없지만 클수록 티가 나는 '느티나무(느티나무)'. 항상 마을의 정자로 마을을 지켜주며 휴식처가 되는 아름드리 느티나무처럼 아이들의 꿈이 자라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꽃 (난초)	사군자 중 여름을 상징하는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며 친구와의 우정을 상징. 아이들의 꿈과 우정이 은은한 향기가 되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새 (독수리)	독수리의 두 날개는 정의와 균형을 나타내며 국가의 번영을 상징하는데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 국가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Ⅱ. 학교 현황

1. 연혁

연	월	일	연 혁 개 요
2006	03	01	전주대정초등학교 개교, 24학급 편성
2009	03	01	전라북도지정 녹색성장 연구학교 및 유러닝 선도학교 운영
2012	11	30	좋은학교 박람회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2013	03	01	전라북도지정 STEAM 현장 확산 방안 연구시범학교 운영
2015	03	01	초등교육실습협력학교 지정(~2017.2.28.)
2020	09	01	제5대 유정복 교장 부임
2022	02	17	제16회 졸업식 (졸업생 118명, 졸업생수 누계 : 1,756명)
2022	03	01	33학급 편성,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 2학급 편성

2. 학생현황(2022. 03. 02 기준)

구 분		초등학교							유치원		
학 년		1	2	3	4	5	6	계	새싹	열매	계
학 급 수		6	5	6	6	5	5	**33**	1	1	
학생수	남	56	67	56	85	65	65	**394**	8	12	**20**
	여	94	52	92	67	72	57	**434**	10	10	**20**
	계	150	119	148	152	137	122	**828**	18	22	**40**

3. 교직원 현황

구분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담임교사	전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유치원교사	교무실무사	영어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방과후행정실무사	돌봄전담사	소계	행정실장	주무관	영양사	조리종사원	경비원지키미	청소원	소계	총계
남				2	4						1	1			**8**	1	2			2		5	**13**
여	1	1	1	8	22	2	1	1	4	2			1	4	**48**		2	1	7		1	11	**59**
계	1	1	1	10	26	2	1	1	4	2	1	1	1	4	**56**	1	4	1	7	2	1	16	**72**

4. 시설 현황

구분	교지	정규교실	관 리 실				지원시설				보건위생실	
			교장실	행정실	연구실	교무실	시청각실	도서실	자료실	방송실	보건실	화장실
보유	12,929㎡ (3,911평)	30	1	1	6	1	1	1	1	1	2	12

구분	특별교실							기타		
	과학실	운영위원실	컴퓨터실	영어실	실과실	돌봄교실	정도관	급식실	강당	숙직실
보유	1	1	1	1	1	2	1	1	1	1

Ⅲ. 대정 교육의 체계

비전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교육 목표	바른 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큰 꿈을 가꾸어 나가는 어린이
학교자율 선택과제	1 ▪ 독서 교육으로 창의적·논리적 사고 향상 2 ▪ 탐구력 증진 및 융합인재교육을 통한 과학적 소양 함양

교육 목표 구현 활동	창의인	도덕인	건강인	지식인
	새롭게 생각하기	배려와 존중 실천하기	기초 체력을 기르기	스스로 탐구하기
	▸ 과학교육의 충실 ▸ 정보화 교육 강화 ▸ 실천중심 환경교육 ▸ 교원전문성 신장 ▸ 독서·토론 교육 강화	▸ 기본생활습관 형성 ▸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 ▸ 애국·애향교육의 충실	▸ 건강증진교육 강화 ▸ 다양한 체험활동 실시	▸ 기초·기본 학습능력 신장 ▸ 방과후 교육 및 진로교육 강화 ▸ 정보화 및 정보윤리 강화 ▸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및 학부모교육 실시
핵심 역량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처리 의사 소통	자기 관리 심미적 감성 공동체	자기 관리 공동체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의사소통 및 공동체

교육상	학 생 상	교 사 상	학 부 모 상
	꿈을 키우는 어린이	열정 있는 선생님	함께 하는 학부모

Ⅳ. 연간 수업일수

1. 1학기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화	삼일절	1	금	학생인권의날	1	일		1	수	지방선거일	1	금		1	월	
2	수	시업식/입학식 학기초세움주간	2	토		2	월		2	목		2	토		2	화	
3	목	친구사랑주간	3	일		3	화		3	금	우리아이관찰의날	3	일		3	수	
4	금	학교폭력추방의날	4	월	학부모상담주간	4	수		4	토		4	월	도박예방주간	4	목	
5	토		5	화		5	목	어린이날	5	일		5	화		5	금	
6	일		6	수		6	금	재량휴업일	6	월	현충일	6	수	교육과정워크숍	6	토	
7	월	생명존중교육주간	7	목		7	토		7	화		7	목		7	일	
8	화		8	금		8	일	석가탄신일	8	수	119안전체험(2)	8	금	전교회장단선거	8	월	
9	수	대통령 선거일	9	토		9	월	가정폭력예방주간	9	목	영어체험센터(5)	9	토		9	화	
10	목		10	일		10	화		10	금	영어체험센터(5)	10	일		10	수	
11	금		11	월	체격검사주간	11	수	체육의날(4)	11	토		11	월	기초수영교육(3)	11	목	
12	토		12	화		12	목	체육의날(5)	12	일		12	화	기초수영교육(3)	12	금	
13	일		13	수		13	금	체육의날(6)	13	월	영어체험센터(5)	13	수	기초수영교육(3)	13	토	
14	월	학생상담주간 학생진단주간	14	목		14	토		14	화	영어체험센터(5)	14	목	기초수영교육(3)	14	일	
15	화		15	금		15	일		15	수		15	금	기초수영교육(3)	15	월	광복절
16	수		16	토		16	월	체육의날(1)	16	목		16	토		16	화	
17	목		17	일		17	화	체육의날(2)	17	금		17	일		17	수	
18	금	교육과정설명회	18	월		18	수	체육의날(3)	18	토		18	월	기초수영교육(4)	18	목	
19	토		19	화	장애이해교육	19	목		19	일		19	화	기초수영교육(4)	19	금	
20	일		20	수		20	금		20	월		20	수	기초수영교육(4)	20	토	
21	월		21	목	스팀데이①	21	토		21	화		21	목	기초수영교육(4)	21	일	
22	화		22	금	세계책의날	22	일		22	수		22	금	기초수영교육(4)	22	월	
23	수		23	토		23	월	다꿈교육주간	23	목	스팀데이②	23	토		23	화	
24	목	119안전체험(5)	24	일		24	화		24	금		24	일		24	수	
25	금		25	월	현장체험학습(2)	25	수		25	토		25	월		25	목	
26	토		26	화	현장체험학습(1,3)	26	목		26	일		26	화		26	금	
27	일		27	수		27	금		27	월		27	수		27	토	
28	월		28	목	현장체험학습(5)	28	토		28	화		28	목	방학식	28	일	
29	화		29	금	현장체험학습(4,6)	29	일		29	수	방과후공개수업	29	금		29	월	
30	수		30	토		30	월	흡연예방교육주간 통일호국교육주간	30	목	방과후공개수업	30	토		30	화	
31	목					31	화					31	일		31	수	개학식 학기초세움주간
수업일수		21	수업일수		21	수업일수		20	수업일수		20	수업일수		20	수업일수		1

2. 2학기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목	학기초세움주간 친구사랑주간	1	토		1	화		1	목		1	일	신정	1	수	
2	금	학교폭력추방의 날	2	일		2	수		2	금		2	월		2	목	
3	토		3	월	개천절	3	목		3	토		3	화		3	금	
4	일		4	화	현장체험학습(1,4)	4	금		4	일		4	수		4	토	
5	월	생명존중교육주간 학생상담주간	5	수		5	토		5	월		5	목		5	일	
6	화		6	목	주제탐구체험학습(6) 현장체험학습(5)	6	일		6	화		6	금	**종업식, 졸업식**	6	월	
7	수		7	금	주제탐구체험학습(6) 현장체험학습(2)	7	월	독서행사주간	7	수		7	토		7	화	
8	목		8	토		8	화		8	목		8	일		8	수	
9	금	추석연휴	9	일	한글날	9	수		9	금	전교회장단선거	9	월		9	목	
10	토	추석	10	월	대체공휴일	10	목		10	토		10	화		10	금	
11	일	추석연휴	11	화		11	금		11	일		11	수		11	토	
12	월	대체공휴일	12	수		12	토		12	월		12	목		12	일	
13	화	인권교육주간	13	목		13	일		13	화		13	금		13	월	
14	수		14	금		14	월	아동학대예방주간	14	수		14	토		14	화	
15	목	장애이해교육	15	토		15	화		15	목		15	일		15	수	
16	금	장애이해교육	16	일		16	수		16	금		16	월		16	목	
17	토		17	월		17	목		17	토		17	화		17	금	
18	일		18	화		18	금	대정의 날	18	일		18	수		18	토	
19	월	독서행사주간	19	수	스포츠리그(5)	19	토		19	월		19	목		19	일	
20	화		20	목	스포츠리그(6)	20	일		20	화		20	금		20	월	
21	수		21	금		21	월		21	수	교육과정워크숍	21	토	설연휴	21	화	
22	목	스팀데이③	22	토		22	화		22	목		22	일	설날	22	수	
23	금		23	일		23	수		23	금		23	월	설연휴	23	목	
24	토		24	월		24	목	스팀데이④	24	토		24	화	대체공휴일	24	금	
25	일		25	화		25	금		25	일	성탄절	25	수		25	토	
26	월	학부모상담주간	26	수		26	토		26	월		26	목		26	일	
27	화		27	목	야영수련활동(5)	27	일		27	화		27	금		27	월	
28	수		28	금	야영수련활동(5) 현장체험학습(3)	28	월		28	수		28	토		28	화	
29	목		29	토		29	화		29	목		29	일				
30	금		30	일		30	수		30	금		30	월				
			31	월					31	토		31	화				
수업 일수		20	수업 일수		19	수업 일수		22	수업 일수		22	수업 일수		5	수업 일수		0

▶ 1학기 수업 일수 : **102일** (2022. 3. 1. - 2022. 8. 30.)

▶ 2학기 수업 일수 : **89일** (2022. 8. 31. - 2023. 2. 28.)

▶ 연간 수업 일수 : **191일** (1학기 102일, 2학기 89일)

▶ 재량휴업일 : **5월 6일(금)**

Ⅴ. 교육과정 운영

1. 2015 개정 교육과정 방향

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 독서교육, 연극교육 강화

나.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

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마련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라. 학습량 적정화 :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

마. 교육 내용・교수 ・학습, 평가의 일관성 강화

바. 체계적인 안전 교육 실시

- 교과(목) : 안전 단원 신설(안전한 생활, 체육, 과학, 실과 등)
- 1~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속 '안전한 생활' 신설·순증(안전교육 및 학교 보육 기능 강화)

아. 한글 교육 강화 : 1, 2학년 한글교육 시간이 27차시 → 68차시로 확대

자.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 : 5, 6학년 실과 교과 17시간 이상 학습

사.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

2. 학년군 교과 시수

[1 ~ 2학년군]

구분			1학년					2학년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교과		국 어	210	101	109	0	210	238	125	113	0	238
		수 학	120	57	63	0	120	136	72	64	0	136
	통합	바른생활	60	29	31	0	60	68	36	32	0	68
		슬기로운생활	90	43	47	0	90	102	54	48	0	102
		즐거운생활	180	85	95	0	180	204	116	88	0	204
창의적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170	125	45	0	170	102	55	47	0	102
			30	15	15	0	30	34	18	16	0	34
연간총수업시수			**860**	**455**	**405**	**0**	**860**	**884**	**476**	**408**	**0**	**884**

[3 ~ 4학년군]

구분		3학년					4학년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교과	국 어	204	108	96	0	204	204	108	96	0	204
	도 덕	34	20	14	0	34	34	18	16	0	34
	사 회	102	56	46	0	102	102	54	48	0	102
	수 학	136	74	62	0	136	136	72	64	0	136
	과 학	102	54	48	0	102	102	54	48	0	102
	체 육	102	58	44	0	102	102	56	46	0	102
	음 악	68	36	32	0	68	68	36	32	0	68
	미 술	68	36	32	0	68	68	36	32	0	68
	영 어	68	36	32	0	68	68	36	32	0	68
창의적체험활동		102	50	52	0	102	102	54	48	0	102
연간총수업시수		**986**	**528**	**458**	**0**	**986**	**986**	**524**	**462**	**0**	**986**

[5 ~ 6학년군]

구분		5학년					6학년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기준시수	1학기	2학기	시수증감	**본교**
교과	국 어	204	105	99	0	204	204	108	96	0	204
	도 덕	34	18	16	0	34	34	18	16	0	34
	사 회	102	54	48	0	102	102	54	48	0	102
	수 학	136	68	68	0	136	136	72	64	0	136
	과 학	102	54	48	0	102	102	54	48	0	102
	실 과	68	34	34	0	68	68	36	32	0	68
	체 육	102	54	48	0	102	102	54	48	0	102
	음 악	68	36	32	0	68	68	36	32	0	68
	미 술	68	36	32	0	68	68	36	32	0	68
	영 어	102	54	48	0	102	102	54	48	0	102
창의적체험활동		102	64	38	0	102	102	54	48	0	102
연간총수업시수		**1,088**	**577**	**511**	**0**	**1,088**	**1,088**	**576**	**512**	**0**	**1,088**

[학년별, 요일별 시간 운영]

요 일 / 학 년	월	화	수	목	금	계
1학년	4교시	5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23
2학년	(1학기)5교시 (2학기)4교시	5교시	4교시	5교시	5교시	24 23
3학년	5교시	5교시	5교시	6교시	5교시	26
4학년	5교시	5교시	5교시	6교시	5교시	26
5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29
6학년	6교시	6교시	5교시	6교시	6교시	29

3. 교과 평가 계획

가. 초등성장평가란?

참학력 신장을 위한 초등학교의 전북형 평가제도로서 '줄 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보고 그 과정의 의미 있는 배움이 삶 속에 연결되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의 평가임.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교과의 성취기준과 학교의 특성,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내용으로 수업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호기심과 질문이 있는 수업 속에서 과정 중심의 다양한 수행평가가 이루어짐.

나. 초등 성장평가제의 필요성과 전북교육청 추진 방향

기존 평가	→	초등 성장평가
서열·결과 중심 평가	**지식보다 *역량*이 요구되는 교육 흐름의 변화로 평가의 변화 필요성 높아짐**	**결과만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획일화된 사고 강조		**다양한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강조**
단순 암기 위주 평가		**학생의 다양한 능력 평가**
지식 전달을 위한 교사 중심 수업		**배움과 성장을 위한 학생 중심 수업**

- 일제식 평가를 폐지하고 교과별 성격과 특성에 적합한 교사별 다양한 평가
- 교사가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중요하게 지도한 내용과 기능을 수업 시간 중에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수업 개선 자료로 활용
-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 자신의 학습을 지속해서 성찰·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평가 시기, 방법, 횟수 등 교사별 다양한 평가 시행(관찰법, 자기평가, 상호평가, 구술, 서술·논술형 평가, 실험·실습, 토론, 포트폴리오, 선택형 평가 등)

다. 우리 학교에서는?

- 일제식 정기고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교사별 평가란 수업을 담당한 교사가 자신이 지도한 내용에 따라 자신이 담당한 학급을 자신이 출제한 문항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학년별·학급별로 평가 시기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평가계획서를 안내장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여 평가 과목, 단원, 시기, 방법 등을 사전예고합니다.
- 학부모 상담주간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한 학기 동안의 학생별 평가 결과를 학기 말에 종합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4. 도서관 운영 계획

가. 도서관 이용과 열람

1) 열람 대상: 본교 학생, 교직원, 학부모
2) 개방 시간: 월~금요일 8:30~16:00
3) 도서관 휴관일
   가) 학기 중: 국경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가정체험학습일, 학교 행사에 따라 휴관함
   나) 방학 기간: 별도의 계획에 따름
   다)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날

나. 대출 규정

1) 대출 권수 및 기간
   가) 학생: 1인 2권 7일간
   나) 교직원: 1인 10권 30일간
   다) 명예 사서: 1인 5권 14일간
   라) 담임교사: 1인 30권 30일간(온책읽기 및 독서교육에 필요한 학급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
2) 대출한 자료의 반납 기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납일로부터 연체일만큼 대출을 금한다.
3) 관외 대출 불가 도서
   가) 귀중 도서 및 특별관리 도서(운영자 판단)
   나) 사전, 연감, 편람 등 참고도서
   다) 당월 정기간행물(과월호는 대출 가능)

다. 변상

1)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
2)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을 때는 운영자가 제시하는 정상가의 유사 도서로 변상하거나, 일정 시간 도서관에서 봉사

라. 도서관 이용 수칙

1) 도서관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2) 자신이 이용한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정돈한다.
3) 도서관 자료 및 비품은 훼손하지 않는다.
4) 대출 시 대출증을 제시하고 대출 기간을 정확히 지킨다.
5) 도서관에는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다.

5.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가. 운영 시기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3월 2일 ~ 7월 28일	방과후 여름 방학	7월 28일 ~ 8월 1일	2학기	8월 31일 ~ 1월 6일	방과후 겨울 방학	1월 6일 ~ 1월 10일
	운영시간	주중	13시10분~16시20분 (원어민 17:10분)	토요일	미운영	휴일	미운영	방학중	9시~ 12시20분
수요.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9월 중							

나. 운영시간표

순	과목명	프로그램 운영 시간	수강료	장소	비 고
1	미술	월, 수(40분) A반 1:10~1:50 B반 2:00~2:40 C반 2:50~3:30 D반 3:40~4:20	25,000	본관 3층 영어실	재료비
2	컴퓨터			본관 3층 ICT실	교재비
3	한자			1학년 5반	교재비
4	과학 실험			본관 4층 과학실	교재비
5	중국어			1학년 4반	교재비
6	음악 줄넘기			강당	줄넘기 개인준비
7	점핑 클레이			본관 4층 보건실 옆	재료비
8	바이 올린	월, 수(40분) A반 1:10~1:50 B반 2:00~2:40 C반 2:50~3:30	27,000	본관 4층 보건교육실	악기 개인준비
9	축구 (풋살)	화, 목, 금(40분) A반 2:00~2:40/ B반 2:50~3:30	$\frac{1}{\text{매달학생수}(n)}$	강당, 운동장	운동복 운동화
10	바둑	화, 목, 금(40분) A반 2:00~2:40 B반 2:50~3:30 C반 3:40~4:20	30,000	본관 4층 과학실	교재비
11	코딩 교육		30,000	본관 3층 ICT실	교재비
12	주산		30,000	2학년 4반	교재비
13	플룻		32,000	본관 4층 보건교육실	악기 개인 준비
14	한국사		30,000	본관 4층 보건실 옆	교재비
15	로봇 항공		30,000	본관 3층 영어실	재료비
16	원어민 영어	반구분 / 월, 수 / 화, 목, 금 A반 1:10~1:50 2:00~2:40 B반 2:00~2:40 2:50~3:30 C반 2:50~3:30 3:40~4:20 D반 3:40~4:20 4:30~5:10	72,000	4층 영어실	교재비

6. 돌봄교실 운영 계획

가. 운영 개요

ㅇ 학기 중

유형	시간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비용부담	비고
오후 돌봄	13:00 ~17:00	주 5회, 약 9개월	돌봄 교실 (4실)	1~2학년 중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88명	간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대상자 무료) 1인당 월 30,000원	

ㅇ 방학 중

유형	시간	기간	장소	대상	인원	비용부담	비고
종일 돌봄	8:30 ~16:30	주 5회, 약 3개월	돌봄 교실 (4실)	학기 중 돌봄교실 이용 학생 중 신청자	88명 이내	간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지원대상자 무료) 1인당 월 30,000원 급식 수익자 부담 또는 도시락 지참	

ㅇ 운영 시기

운영 계획	운영 기간	1학기	3.2~7.27	여름 방학	7.28~8.30	2학기	8.31~1.5	겨울 방학	1.7~2.29
	운영 시간	주중	13:00~ 17:00	토요일 휴일	미실시	재량 휴업일	미실시	방학	8:30~12:30 또는 8:30~16:30

나. 돌봄교실 운영시간표

ㅇ 학기 중(오후 돌봄)

	월	화	수	목	금
13:00~13:40	개인 과제 및 기초학습지도				
13:40~14:00	간식 및 휴식				
14:00~15:30	특기 적성 프로그램				
15:30~16:30	신체활동	창의 활동	교구 활동	신체활동	독서활동
16:30~17:00	정리 정돈 및 귀가 안전지도(귀가 동의서 방법에 따른 귀가)				

ㅇ 방학 중 운영

- 방학 중 운영 시간, 비용,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은 수요조사 및 학교 협의 후 별도의 방학 중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7. 학부모회 조직 운영 계획

가. 목적

단위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부모회 기능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의 지원 및 적극적인 동참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다. 학부모회의 조직

1) 회원: 전주대정초등학교 전체 학부모
2) 임원 및 임기: 학부모 회원 중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및 각 학급별 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라.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

1) 선출기간 : 2022. 3. 10.(목) ~ 3. 28.(월)
- 공 고 일 : 2022. 3. 17.(목)
- 등록기간 : 2022. 3. 17.(목) ~ 3. 23.(수) (7일간)
- 선 거 일 : 2022. 3. 24.(목) ~ 3. 28.(월) 13:00까지
- 당선자 발표 : 2022년 3월 28일 (월) 16:00

2) 선출방법
가) 학부모회장 선출 시 입후보 등록 기간을 정하여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한다.
나)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 선출 방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
다) 입후보자가 1명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며, 2명 이상일 경우 투표를 실시한다.
라) 임원진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학교종이 앱을 활용한 비대면 투표로 정한다.
마) 투표권은 재학생을 기준으로 1인 1표이며, 자녀 수가 2명 이상일 경우 학부모 1명이 참석한 경우는 투표권 1표, 학부모 2명 이상이 참석할 경우 각각 1표씩 2표 행사, 3명 이상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최대 2표만 행사할 수 있다.

8. 출결 규정 안내

1. 개근: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2.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오전 9시)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3.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하는 경우.

4.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가. 출석 인정 결석

1) 지진,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혼(형제, 자매, 부, 모)	~1일
• 입양(학생 본인)	~20일
• 사망(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 사망(증조부모, 외 증조부모)	~3일
•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 사망(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나. 결석 관련 서류 안내

1) 질병 결석

내용	제출서류
• 질병으로 1~2일 결석 시	**결석계**와 **증빙서류**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
•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 시	**결석계**와 (5일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2) 기타 결석

내용	제출서류
•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병간호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결석계**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3) 출석 인정 결석

내용	제출서류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계**와 **의사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병명과 격리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서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청첩장 또는 사망진단서 등

개인체험 학습으로 인한 결석	• 계획서 제출 :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교사에게 사전 알림 • 1회 가능 일수 : 국내, 국외 관계없이 10일 이내 (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연 15일 이내(휴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 체험학습과 가정학습 기간 합계는 연 30일 이내 • 형제자매 각자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해당 • 계획서 제출 : 1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으로 교사에게 사전 알림 • 1회 가능 일수: 10일 이내(장소-가정)	가정학습 계획서 및 보고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결석 관련 서류 안내>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PCR 음성확인서 •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6~7일 차)[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3일 내)PCR 음성확인서 • (동거인의 검사일로부터 6~7일 차)[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결석>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4) 미인정 결석

내용	제출서류
•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학습 기간 • 학교장 허가체험학습 허가 기간을 초과한 경우	결석계

※ 출결 관련 신청서 자료 등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업로드되어있습니다.

학부모 연수 자료

생활 규정, 학교 규칙, 출결 관련 자료 등 학교생활에 관련 자료는 학교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생활교육 연수 -1-

I.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이해

◎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 뱉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 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 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 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함부로 폭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 학생의 징후	가해 학생의 징후
▸몸이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아진다. ▸용돈을 요구하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간다. ▸멍자국이 있어 물어보면 그냥 다쳤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한다. ▸운동화, 휴대폰, MP3,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한다. ▸친구가 시키는대로 그대로 따르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많이 본다. ▸SNS, 교과서, 노트 등에 욕설, 폭언, 협박이나 "죽고 싶다" 등의 낙서가 있다. ▸웃음이 없어지고 풀이 죽어서 맥없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 ▸이유없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다. ▸엄마나 동생 등 만만한 대상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 물어보면 친구에게 받았다고 한다.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졌다.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부모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비밀이 많고 대화를 잘 하지 않는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거나 외출이 잦아진다. ▸자신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유와 핑계가 많고 과도하게 자존심이 강하다. ▸성미가 급하고 충동적이며 공격적이다. ▸작은 칼 등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다. ▸등하교 시 책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나 후배가 있다.

4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 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5 학교폭력 신고 방법

◎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12(범죄신고),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

6 학교폭력 도움 자료실

◎ 학교폭력예방 도란도란 홈페이지 (http://doran.edunet.net)

◎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Ⅱ.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1. 아동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학대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아동 학대의 사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3. 아동학대 예방 노력

-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생활을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훈육이란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 부적절한 정서반응의 예
>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적, 경멸적,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 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5. 아동학대 신고요령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는 112로 신고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될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26조)**

가. 1 STEP

-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기
-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학대피해 아동이 더 심각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고 세세한 면담은 피하기
- 학대후유증에 대해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하고 이를 기록하기

나. 2 STEP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112로 즉시 신고하기
- 아동을 안정시키고,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성학대 아동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기

다. 3 STEP

-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시 적극 협조하기
- 피해아동 및 가정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 보호중인 피해아동의 친권자가 아동 인도 요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취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기

Ⅲ.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의 개념

- 일반적 정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양상을 띠어 국가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
- 가정폭력 처벌법 2조: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함

2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함

3 가정폭력 신고의무 규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보호시설.의료기관 치료 연계 등이 이루어짐

▷피해자 긴급구호 : 여성긴급전화 (☏ 1366), 다누리콜(☏ 1577-1366)

▷무료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피해치료 지원 : 지자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4 가정폭력 발생시 대처법

-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 ④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⑤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1호~3호)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임시조치 5호(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재발 우려 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①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②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③ 전화, 전자 우편 등 접근금지 ④ 친권행사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 가능한 지원제도 :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무료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의료지원, 아동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주거지원

5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 아동기의 가정폭력은 아동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으로 아동의 건강, 발달,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 올바른 자녀양육방법 습득 -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IV.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 자살이란?

자살의 개념은 포괄적으로서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에 이르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봅니다.
자살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 '의도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2 청소년 자살

- **학생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중독)
- 월별 자살현황: 3,4,9,10월**(신학기)** → 친구, 성적부담, 교우관계 등 심리적 어려움

3 청소년 자살 심리

자기 처벌 심리	못난 자기 징벌성 심리
자해 심리	욕구좌절 시 흥분하는 충동적 심리
보복심리	부모, 선생님, 이성친구에 대한 강한 분노로 보복심리
재결합심리	대인관계 상실 시 죽은 친구나 부모를 저승에서 만나기 위한 심리
회피심리	입시부담, 학교폭력 등의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심리

4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가족 갈등, 가족구조변화, 경제적 악화	가족간 의사소통 활성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에 노출	경청과 수용, 정서적 지지
심리적 내성이 약함	친밀한 교우관계
자존감 낮음, 우울함	적절한 스트레스 해소법
스트레스 과다(학업,진로,관계갈등 등)	인정과 격려
자살시도 경험	동아리 활동, 사회적 참여
자살과 관련된 가족사	여가 생활 및 취미활동

5 자살의 징후

언어상의 단서	• 직접 말로 표현, 일기, 편지 등에 「내가 사라져줄게」,「절망적이야, 아무것도 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내가 없다면 사정은 나아질지도 모른다.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거야. 엄마, 아빠 미안해. 안녕. 내가 보여줄거야. 만족하길 바라.」 등의 표현

행동상의 단서	• 행동이 갑자기 명확히 변함 (단정치 못한 외모, 공격적이거나 우울한 모습 등) • 성적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거나 주의집중을 못하는 학업관련 문제 • 개인이 갖고 있는 물건을 정돈 (물건정리, 주변사람에게 나눠주기. 소중한 물건을 버리거나 남을 줌) • 용건없이 전화 잘 지내라. 안녕 • 평소와 달리 거식, 과식, 외모에 무관심 • 수면형태 변화 • 갑작스런 기분 향상- 평온한 상태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환경상의 요소	• 환경적응의 어려움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잃은 상태 • 중요한 인간관계가 단절 • 가정에 큰 변화가 생김

6 자살의 징후의 대처방법

경청	자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며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기
격려	관심을 표현할 때는 적절한 말투와 억양, 자세를 취하기 『나는 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이 있는지를 다 알 수 없지만 너와 함께 문제를 마주하기를 희망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임하기
관찰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묻기 자살에 대한 생각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자녀는 보호자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함
행동	자살위기에 처해있다고 느낄 때는 다른 가족과 학교에 알려 자녀가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
주의	자살을 준비하려는 언어 및 행동의 이상 징후에 대해 민감해야하고, 자살 준비를 하는 자녀에게는 반드시 가족, 교사, 전문가에게 알리기
지지체계 알림	현실에서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려주기 친구, 교사, 종교인 등 자녀에게 관심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7 도움 사이트 및 상담 전화

- 한국생명의 전화 www.lifeline.or.kr/1588-9191
- 한국자살예방협회 사이버상담실 www.suicideprevention.or.kr
- 사랑의 전화 www.counse124.com/1566-2525
- 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739-2000

V. 인권교육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안돼!”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 “야, 임마”, “이 새끼”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5. 자녀존중 십계명

가.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나.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라. 형제자매간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마.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사.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자.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차.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

♧ 어린이가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 인권 지킴이 ▶ 4개-7개 :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 인권 오염이 ▶ 4개-7개 :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VI. 도박예방교육

DANGER
1336
청소년 도박 = 불법
청소년 도박에도 유행이 있다?
강원센터 경기남부센터 경기북부센터 경남센터 경북센터 광주전남센터
대구센터 대전충남센터 부산울산센터 서울센터 세종충북센터 인천센터
전북센터 경선도박문제회복센터 제주센터

2020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한 도박
기억하고, 조심해요
0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설 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스포츠 도박에 참여한 경우 (43.21%)
02
사다리게임
홀짝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도박으로 사다리, 다리다리 등 미니게임형 도박에 참여 (19.91%)
03
기타
기타 미니게임 등 도박에 참여한 경우 (17.23%)
*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언급한 도박의 종류

도박종류 자세히 알아보기
불법 스포츠도박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 아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스포츠 도박을 말합니다. 청소년은 어떤 경우에도 투표권을 구매하거나 또는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SNS 광고 등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가입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다리 게임(도박)
홀짝 게임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3분, 5분마다 한 번씩 게임을 진행하여 1일 288번 이상 베팅이 가능합니다. 다리다리와 같은 변종 도박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접하는 도박이므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귀여운 이미지와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현혹하고, 성인이 없에서 보아도 도박처럼 보이지 않아 도박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언급한 도박의 종류

도박종류 한걸음 더 알아보기
파워볼
로하이
바카라
그래프 게임
청소년들이 많이 언급한 도박 종류들
파워볼
합법사행산업기관인 동행복권사이트의 파워볼 추첨 결과를 활용하여 베팅하는 불법 도박
*청소년의 경우 동행복권사이트 이용도 불가합니다.
로하이 * (홀짝) 슈퍼마리오, 전사와악마, 언더오버
홀짝과 유사한 형태로 화면에 오픈된 카드 두 장의 합이 5 미만인지, 5 이상인지 맞추는 방식
바카라 * (비슷) 드래곤 타이거
카드로 하는 도박의 종류로 숫자 9에 가까운 패를 가진 측이 이기는 방식
그래프게임 * (비슷) 소셜그래프
6.40x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 배당이 멈추기 전에 즉시 출금버튼을 누르면 끝나는 방식
* 2020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이용한 청소년들이 언급한 도박의 종류

o 도박문제가 의심된다면 가정에서 자녀와 '소통'하셔야 합니다.

- **<u>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도박문제에 대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u>**

☞ 김기리의 도박문제 예방교실 학부모편

https://www.youtube.com/watch?v=xCG2UbM3oBg&feature=youtu.be

- **<u>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하시길 바랍니다.</u>**

☞ 청소년 도박문제 선별척도(CAGI)

https://www.kcgp.or.kr/pp/gambleIntrcn/2/selfDgnss.do?gubun=con2

☞ 전문기관(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상담문의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연수**	-2-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 활동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Ⅰ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2019.10.17.시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호, 2019.10.17.시행)

Ⅱ 교육활동의 침해란?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 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폭행 및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항 제2호)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유통(교원지위법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 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 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

–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 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 **(침해 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교원지위법」제18조 제1항)
- **(피해 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제15조 제2항)

Ⅳ 학부모의 교육 활동 참여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급 소통방, 각종 연수 및 공개수업 참여 등.**

□ **학부모의 방문 절차**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Ⅴ 학부모님 협조 사항

- 교육 활동 및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 수업 및 평가 내용 등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위하여 전화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은 상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니,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금지 연수 -3-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을 계기로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의 정의(제2조)

가.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 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국가교육과정) 및 교육감이 정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시·도 교육과정)과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 1항에 근거하여 편성·운영되는 단위학교 교육과정(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나.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구분	주체	정의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일반
선행학습	학습자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 유발행위

1)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2) 선행교육에서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하며 유발행위에 저촉됨
3)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1)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2)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3)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2014.3. 제정, 2019. 3.26.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4 선행학습의 문제점

가.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나. 사고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다.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라.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5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방침

가. 국가 수준 및 시도교육과정 운영 지침 준수
나.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교과별·학년별 교육과정과 평가내용 일치 여부

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학업성적관리 위원회 등의 각종 기구들로 하여금 철저 감독
라. 방과후 학교 운영 점검: 선행교육과 관련된 방과후 활동 금지 철저

6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 청렴 교육 연수 -4-

1 부모님이 알아야 할 청렴 상식

가. 청렴의 정의

○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 '청렴'은 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정의감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공정성.투명성.책임성 등 바람직한 가치를 실천하는 적극적 의미의 행동기준

나. '부패'와 부패 행위

○ '부패'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이 동원되곤 함

○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1)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다. 혼돈하기 쉬운 부패행위

○ **부자에게 뇌물을 받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면 괜찮다?**

- 부도덕한 이익이거나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불법한 보수나 부정한 이익은 곧 '뇌물'이 됩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경우에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중에 돌려주면 뇌물수수가 아니다?**

- 일단 자신의 이득으로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후에 반환하였다고 해도 뇌물죄입니다.

2 국내 주요 청렴정책은 이렇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 '22년부터 청렴도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로 개편되어 17개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573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 평가 내용
  - △ 청렴체감도: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도를 설문조사로 측정
  - △ 청렴노력도: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와 구성원 인식조사 결과를 종합해 평가
  - △ 부 패 실 태: 기관별 부패사건 등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해 종합청렴도 산정

3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8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관위 규칙,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OECD 회원국은 필수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함**

공직자 행동강령

▪ 권익위는 공직부패 예방을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제정 · 운영

공정한 직무수행	❖ 특혜의 배제 (지연 · 학연 · 혈연 · 종교 등의 이유)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신고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이런 것도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스승의 날 선생님께 화장품 세트(3만원 초과)를 선물했다면?

⇒ 재학생, 학부모, 계약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선물은 행동강령이 금지하는 '금품 수수'에 해당합니다. 단, 졸업생으로부터의 감사의 선물은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없나요?

-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한 '답사담당 선생님의 무료관광'
- 현장체험 행사 진행업체로부터 숙식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

⇒ 모두 공직자 행동강령(부당이득의 수수 금지)에 위배됩니다.

❒ 사회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정(情)인데... 부패 맞습니다.

- "경조사때 조금 더 넣어주는 거야/ 세상 정이 다 그렇지 /작은 선물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 공무원은 경조사 5만 원 이상, 선물 3만 원 이상을 넘으면 주저 없이 행동강령담당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5 청렴과 가정의 행복

❒ 청렴은 사회생활에만 국한되었다고 생각하면 금물입니다.
개인의 청렴은 가정의 평화와 조직의 건강 그리고 사회의 발전의 공통된 요소이며 상호작용 속에서 청렴 문화는 성장해갑니다. 청렴 문화의 성장은 다시 사회적 기반 시설이자 자본으로 사회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축소 시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결국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줍니다. 청렴은 우리 생활의 맑은 공기와 같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해야 합니다.

○ 가정도 청렴해야 행복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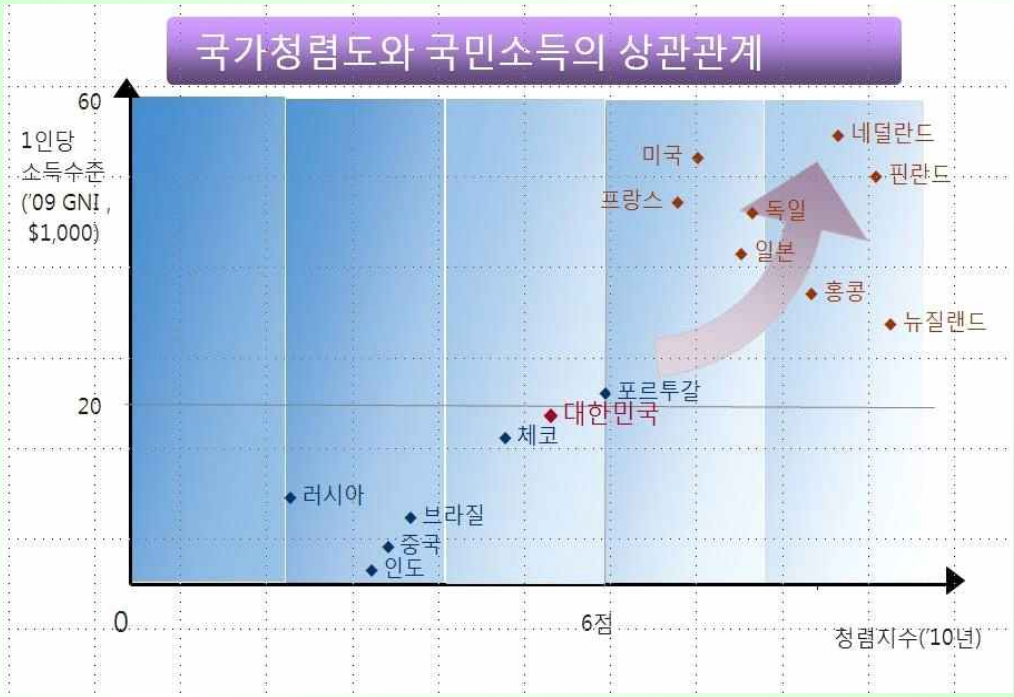

6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국민권익위원회 자료)

가.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시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나. **Q: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에 올라갔습니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작은 감사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청탁급지법 상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가액기준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이전 학년도 담임 선생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드려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네, 허용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 **Q: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마. **Q: '스승의 날'에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바. **Q: 담임선생님의 결혼식에 학부모들이 선물이나 축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사이의 선물.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기준인 5만원.10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업습니다.

사. **Q: 학교 축제 때 학부모회에서 떡볶이를 판매한 수익금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증하는 경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서 물품이나 시설수리비용을 학교에 기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됩니다.

저작권 교육 연수 -5-

❑ 저작물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낸 것이어야 하고,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아이디어 · 절차 · 방법 · 시스템 · 개념 · 원리 · 발견 · 장치 · 원칙 · 이론 등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 저작권

저작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 . 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되는 때에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한다.

가.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원작자나 창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저작권 이용 허락

공익 목적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를 벗어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개별 저작권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나 개별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거나 위임한 때에는 해당 신탁단체나 업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저작권 보호 기간

가.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70년간이고 무명(無名)으로 공표되거나 실명(實名)이 아닌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저작물, 영상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

나. 한, 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3년 7월 1일부터 보호 기간이 20년 연장

다. 실연(實演)은 실연한 때로부터 70년, 음반은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

라. 보호 기간의 기산(起算)은 사망 또는 공표한 때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계산

❑ 법적 책임 및 분쟁 해결

가. 민사책임: 피해자는 침해 예방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음

*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지나간 때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

나. 형사책임: 법질서 위반에 따른 사회적 책임, 징역이나 벌금

1) 저작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 소추가 가능한 친고죄(親告罪)가 원칙

2)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작권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나 제삼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소추가 가능한 비친고죄

3)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7년, 저작인격권 침해죄의 공소시효는 5년

다. 분쟁 해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제도

	정보통신 윤리교육 연수	-6-

❑ 자녀에게 말해주어야 할 인터넷 이용 수칙

가. 부모의 허락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절대로 직접 만나면 안 된다.
나. 부모의 허락 없이 부가적인 요금을 내야 하는 정보나 사이트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행선지 그리고 현재의 소재지 등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라. 인터넷상에서는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비밀번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는 부모의 허락 없이 절대로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
마. 폭력적이거나 불건전한 내용의 전자우편이나 의심스러운 제의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장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자녀에게 개인정보의 소중함 일깨워주기

가.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ID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개인정보는 개인의 매우 중요한 정보 재산이므로 소중하게 취급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에 자리를 일시적으로 비울 경우를 대비하여 암호화한 화면보호기를 설정한다.
라. 전자 상거래 정보 및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 기업과 상대 사이트의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보호 방침 등을 반드시 읽어보고 개인정보 관리 정책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가르친다.

❑ 우리 아이 인터넷 예절 키우기

가. 자녀들과 함께 적절한 사용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나. 컴퓨터는 가족이 공유하는 장소에 놓아라. 자녀들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게 되어 보다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 부모도 함께 참여할 기회가 넓어진다.
다.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가져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태 모두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다.
라. 신상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시켜라. 인터넷상의 낯선 자에게 집 주소나 학교명, 전화번호 등 사적인 개인 자료를 함부로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한다.

❑ 중독 예방 생활지도

-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 활용

※활용 방법 : 게임문화재단(www. gamecheck.org)에서 학생의 게임 이용 실태 파악학생과 올바른 게임 이용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게임 이용 시간, 게임 종류)→게임사이트 방문하여 게임시간선택제 이용신청→게임회사는 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게임 시간제한

보건교육 연수 -7-

성교육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교육

◆ 성교육에 임하는 부모님들이 가져야 할 자세

① 성교육을 위해 부모님이 먼저 변화해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로 성을 인식합니다.
② 자녀들의 성적 성숙을 인정하여 현실감각을 갖고,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③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④ 딸이나 아들 모두 이성(異姓)의 성 발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⑤ 성교육은 과학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 윤리적인 면을 병행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⑥ 질문에 답할 때는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불충분한 대답이라도 좋으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⑦ 자연스러운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계기를 포착하여 성교육을 합니다.
⑧ 정확한 성 지식을 알고 있어야 잘 지도하므로 부모 자신도 올바른 성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⑨ 부모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전문 상담 기관을 찾아 배우도록 합니다.

◆ 어린이들이 성범죄로부터 취약한 이유는?

① 어린이는 애정 표현과 성폭력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②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③ 대부분의 어린이는 어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④ 어린이는 어른보다 힘이 약해서 저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⑤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상급생(중.고교생 등)이 지시하는 경우 저항 없이 따르게 되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⑥ 성 안전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은 성폭력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 올바른 성(性) 예절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성희롱, 성폭력)

흡연예방

부모님과 함께하는 흡연 예방 교육

매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최근 청소년 온라인건강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여러 나라 중 흡연 시작 연령이 12.7세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 흡연 진입을 차단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녀에게 흡연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 나이의 흡연은 훨씬 더 나쁘다던데?

* 어릴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심신이 미성숙한 상황에서 담배 속 온갖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중독이 심해지고 신체 발달(특히 폐의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기의 흡연 습관은 성인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니코틴 의존에서 더 나아가 알코올(술)이나 다른 의존성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흡연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나요?

* 부모의 흡연은 흡연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행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친구와 가족의 흡연이 흡연 욕구를 느끼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므로 비흡연자 청소년 앞에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과 친구는 흡연의 자제가 필요합니다.

담배회사의 주 고객은 10대?

* 평생 흡연 가능 기간이 짧은 성인보다 그 기간이 긴 청소년은 담배회사의 주요 마케팅 대상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담배회사의 대표적인 마케팅 전략은 편의점 계산대 주변 혹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간식거리 옆에 담배광고물을 설치하는 것과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간접흡연과 3차흡연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뇌졸중,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성숙 방해, 천식 등	

약물교육

부모님과 함께하는 약물 오・남용교육

1.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이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특히 부작용이 심하고 습관성 및 의존성이 있으며 내성이 잘 생기고 약물 간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은 전문약으로 규정한다.
-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즉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 약으로 이러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다.

2. '식후 30분 후에'...약 복용의 비밀, 왜?

-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약은 대부분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식후 20~30분이면 음식물이 위장에 많이 남아있어 위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이며 이때 약을 복용하면 속쓰림 등 위 점막에 대한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약을 복용할 때는 충분한 물(100~200㎖)로 복용하는 것이 약으로 인한 식도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구강붕해정(입으로 씹어먹는 종류의 약)이 아니라면 귀찮아서 그냥 알약을 삼키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흔히 속쓰림, 소화불량, 어지럼, 두통의 증상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
- 처방약, 비처방약 등 약을 새로 복용할 필요가 있다면, 현재 본인이 먹고 있는 약에 대해 의사나 약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 약 중에서도 같이 복용하면 약의 효과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아스피린, 와파린 등의 항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치과 치료나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 약물치료와 수술 스케쥴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가정상비약 오·남용의 문제점

▸ **해열제, 상온에서 1개월까지만 보관해야!**

- 병원에서 처방받은 시럽제 형태의 해열제는 상온에서 1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 시판되는 시럽제의 경우는 개봉하지 않은 채 서늘한 곳에서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 한다면 1~2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 먹기 전에 반드시 색깔이나 냄새를 확인해 변질 여부를 확인한다.

▸ **소화제 너무 자주 복용하면 오히려 소화장애!**

- 너무 잦은 소화제의 복용은 오히려 위장의 기능을 저하시켜 더욱 잦은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 있는 제산제는 장기복용하면 변비,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마그네슘이 든 제산제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 **연고류, 개봉 후 1년 넘으면 상처 덧날 수도 있어요**

- 강한 스테로이드가 든 연고의 경우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가 쪼그라들거나 모공이 확장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개봉 후 1년이 넘은 연고는 습진이나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피부가 두꺼워져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상태를 봐서 곰팡이가 피거나 색이 변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날 경우 폐기해 버려야 한다.

▸ **소독약, 뚜껑 연 상태로 보관하면 효과 없어요**

- 과산화수소수나 소독용 에탄올은 뚜껑을 열어 두거나 직사광선을 오래 쬐면 산화되어 살균 소독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할 수 있다.
- 사용 후 뚜껑을 꼭 닫아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1년이 지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파스, 삐어서 열 나고 부으면 쿨파스 사용을 해야 합니다.**

- 타박상 초기에 온찜질이나 핫파스를 사용하면 손상 부위의 모세혈관이 확장돼 오히려 부종과 출혈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쿨파스를 사용하고, 부기와 염증이 가라앉은 후에 핫파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파스는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한 번에 3장 이상 붙이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파스를 떼어 낸 자리에 곧바로 새것을 붙이면 습진이나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소 2시간 정도 여유를 두었다 붙이는 것이 좋다.
- 어린 학생들의 경우(저학년) 피부가 약해 붉게 부어오르는 등의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붙이는 파스는 쓰지 않는다.

감염병예방

부모님과 함께하는 감염병 관리교육

1.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염병

병 명	병원체	감염경로	전염 가능 기간 (등교중지 기간 참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두분비물, 객담 → 비말감염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24시간 없을 때까지
수 두	수두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모든 발진이 딱지가 앉을 때까지(약 7일)
유 행 성 이하선염	멈프스바이러스	타액 → 비말감염	증상발현 후 5일까지 (이하선 종창 소실일 까지)
풍 진	풍진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발진 소실일까지)
유 행 성 각결막염	아데노바이러스	눈곱, 분변 → 접촉감염	주요 증상 소실 후 2일 경과까지
성홍열	A군B군용혈성 연쇄상구균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치료 시작하고 24시간까지
홍 역	홍역바이러스	인두분비물 → 비말감염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해열 후 3일 경과까지)

2.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학생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이 됩니다. 이들 질병은 다른 학생에게 전염이 되므로 반드시 등교중지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선 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만약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등교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대상자 : 법정 감염병 환자, 법정 감염병 의사환자(의심환자), 법정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3. 등교중지 방법

1) 전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후 병원에 갑니다.
2)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을 받으면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3)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 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의사 소견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면 감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의사의 확인서에 감염성 **질환명, 격리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격리 치료 기간만 출석으로 인정됨)

4. 유의사항

1) 감염병마다 전염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전문의가 지정한 기간 동안은 등교하지 않고 격리 치료합니다. (병원 진료 외 외출 금지, 학원도 가지 않습니다.)
2)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는 법정 감염병 등교중지 대상자에 한하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하여 등교중지 시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코로나19 부모님과 함께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 선별진료소 현황**

- 완산 선별진료소 : 전주시 화산체육관(동일)
- 덕진 선별진료소 : 소리문화의 전당 앞 실내 배드민턴장(변경)
  (09:00~18:00 / 17시에 검사 마감, 12시-1시 소독으로 검사 불가)
  ☎063-281-6341~6344

*** 평화동 지정의료기관**

- 누가내과연합의원(08:30~19:00) ☎063-286-2717
- 송민주내과의원(09:30~19:00) ☎063-224-1234
- 이은철이비인후과의원(09:00~18:20) ☎063-228-0610
- 평화로운 내과의원(09:00~18:00) ☎063-237-3334
  (다른 지역의 지정의료기관은 ☎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코로나19 예방 ◈

1. 오미크론 변이 특성

- 전파력·중증도: 델타 대비 전파력이 2~4배 높으며, 감염재생산지수 10 추정
- 백신효과: 감염예방, 중증 예방 등 백신효과는 델타 대비 감소
- 임상적 특성: 무증상이 40~50%, 유증상자의 주요 증상은 인후통, 발열, 두통, 기침 등이며 대부분 경증, **증상 지속 기간은 평균 5.5일**

2. 개정된 지침 안내 -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1판 수정판)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①	격리(7일)	-	격리기간은 등교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②	**-변경- 수동감시(10일)**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지정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 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 부득이하게 미 등교 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가능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 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상세 설명】

①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일)에는 등교중지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②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 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 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
※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 동 내용은 **3.14.(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등

3. 신속항원검사(선제 검사) 안내

< 학생 및 교직원 신속항원검사 시행 예시 >

① 매주 학생용 2회분을 학교에서 배부 (변경될 수 있음)

② 학기 중 확진자 발생 시 배부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가능(접촉자 분류 시 3회 중 2회 사용 가능하며 가급적 마지막 검사는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③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요일, 일요일 등 날짜를 정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4. 학교 구성원 건강관리 강화

① 등교 시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

②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③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일 때 등교가 가능하지만 의심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엔 가정에서 휴식하며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며 이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활용하여 출결 증빙이 가능

④ 외부인 출입 자제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예방접종 여부 등 확인 후 이상 없으면 방문 허가

5. 소아 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안내

①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개인위생(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합니다.

② 학급에 확진 학생이 발생하여 고위험 기저질환 학생이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첨부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발생 시 대응◈

1. 학교 내 접촉자 자체 조사 및 진단검사 실시

※ 선제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님

<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활용) **>**

□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근무)**하는 **학생(교직원)**

⇒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기숙사 같은 호실 생활자,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 학교 자체 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 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접촉자'와는 상이함

※ 상기 참고 기준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다만, 의료기관 진료 후 의사가 판단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학교 자체 조사**를 거쳐 확인된 **접촉자**에 대해 **진단검사(권고)** 안내

- **(고위험 기저질환자) 7일간 PCR 검사 1회(학교장 확인서 지참),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 검사 활용) 실시 권고**

  * 초기 검사는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이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 건강조사 기록지 취합 후 별도 관리함(3월 4일 가정으로 배부됨)

- **(그 외)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2일 간격/선제 검사 활용) 실시 권고**

(**검사 일정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된 후 24시간 이내, **2차**: 1차 검사 후 2~3일 뒤, **3차**: 접촉자 분류 시부터 6~7일 차)

<학교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 조치>

대 상	검사방식 ※ 7일간	검사장소	등교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검사 1회, 신속항원검사 2회**(선제 검사 활용)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그 외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제 검사 활용)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 등	

○ 상황별 학교 대응 사항 안내

① **등교 전**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경우

: 등교 시간 전에 알게 된 경우 담임교사는 같은 학급 아이들이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를 완료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학급에 개별 안내합니다.

이때, 안내를 받은 당일 오전 혹은 전날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등교한 학생, 확진되었던 학생(확진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않은), 확진 학생의 **검사일** 이틀 전부터 접촉이 없었던 학생(결석 등)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합니다.

※ 학부모님께서는 나의 자녀가 확진 통보를 받은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해주세요. PCR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신속항원검사 양성) 미리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② **등교 후** 확진 학생이 발생한 경우

: 확진 학생이 발생한 학급의 학생들은 점심 식사 전 귀가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전파 방지)

이때, 당일 오전 혹은 전날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등교한 학생, 확진되었던 학생(확진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않은), 확진 학생의 검사일 이틀 전부터 접촉이 없었던 학생(결석 등)은 귀가하여 신속항원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학부모님이 학생을 데리러 오기 위해 학교로 방문하시는 경우 학생은 3층 상담실에서 대기하며, 전파 위험이 있어 급식은 불가합니다.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항원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2.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사용

내 자녀가 확진된 경우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의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에 확진된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 정보는 학교와 교육청에 보고되어 학생들을 관리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등록하면 일주일 동안 자가진단 앱에 반영되므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자가진단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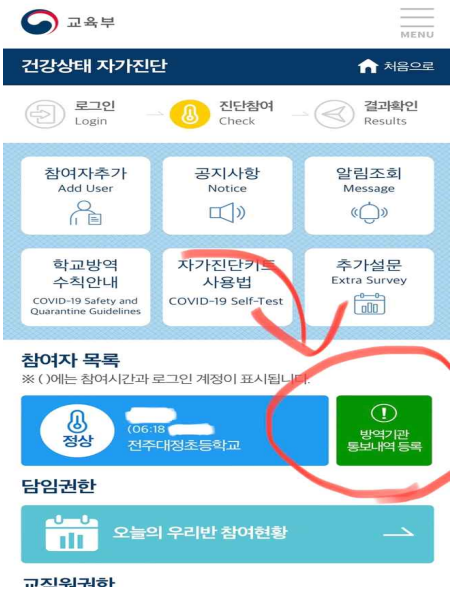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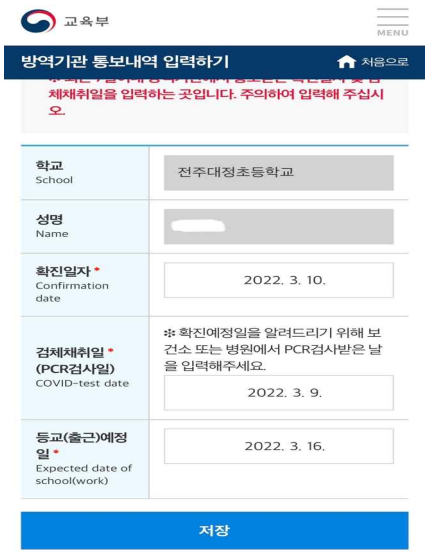

※ 등교일은 확진학생 본인의 자가격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생이 확진되고 다른 동거인이 확진되었다고 해서 추가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 확진 학생이 격리가 해제된 후 3일간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고1 소아청소년 고위험기저질환자 범위

구 분	주요 질환
내분비계 질환	· 당뇨 (유형무관) · **소아 청소년 비만 (체질량지수 95 백분위 수 이상)** **※ 대상 여부 확인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성장도표-측정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오른쪽 QR코드로 접속 후, 계산 가능** **(머리둘레는 입력하지 않아도 체질량지수 산출 가능)** 〈성장도표 계산기〉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부신기능저하증
심혈관 질환	· 혈 역학적으로 의미 있는 문제가 있는 선천성 및 후천성 심장병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신장 질환: 만성신부전 (eGFR<60 ml/min)
만성 호흡기 질환	· 중증 천식 · 만성 호흡기 질환 (간질성 폐 질환, 낭성 섬유증, 폐쇄성 세기관지염, 기관지 폐 이형성증 등)
신경계 질환	· 만성 신경계 질환 1) 신경장애 및/또는 뇌성마비, 근이영양증을 포함한 신경근 질환 2) 신경계 또는 근육의 유전성 및 퇴행성 질환, 또는 호흡저하와 관련된 기타 질환
면역저하 질환	· **장기 이식환자** 1) 신장이식 환자 2) 면역억제 치료 중 (신증후군이나 만성 사구체 신염 등으로 1개월 이상 면역억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 **자가면역 또는 자가 염증성 류마티스 환자** 1) 항 류마티스 약물요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2) 과거 심각한 감염의 병력이 있었던 환자 3) 단, 질병의 활성도나 환자의 상태, 치료 중인 약물에 따라서 접종 일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접종 전 소아 류마티스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차성(선천) 면역결핍증 환자(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 **비장절제 또는 기능적 무비증** · **Sickle Cell disease/Thalassemia (국내 희귀)** · **면역억제 치료** 1) 고용량 코르티코스테로이드 (≥20mg prednisone or equivalent per day when administered for ≥2 weeks) 2) 알킬화제 3) 길항물질 4) 이식 관련 면역억제제 5) 암 화학요법제 6) 종양 괴사 차단제 7) 면역억제제 또는 면역조절제인 기타 생물학적 제제

참고2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 수칙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감염 예방

❶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

❷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 하루 3번, 10분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❸ 대면 접촉 줄이기

- 사적모임은 6인 이내, •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짧게, •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조기진단·조기치료

❹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심증상시 신속하게 PCR 검사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 PCR 검사, 확진 시 먹는 치료제 등 조기 치료받기

❺ (일반) 의심증상시 신속항원검사 받고, 치료받기

선별진료소·지정의료기관·자가 신속항원검사(양성 시 PCR검사), 확진 시 재택치료

서식1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학년 반 번호 이름:

위 학생은 코로나19 의심증상자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자율 보호 및 등교중지를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가정에서 확인한 학생의 현재 건강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교 전 건강상태
-체온: ℃ (측정일시: 월 일 시간)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유( ) 무( )
- 설사 유( ) 무( )
- 메스꺼움 유( ) 무( )
- 미각이나 후각의 마비 유( ) 무( )
※ 등교일 아침에 학생의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학생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2022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보 호 자 명: (서명 또는 인)

서식2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본인 또는 가족 (동거인)의 해외여행력	여행자	여행일자	여행국가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증상 (구토, 권태감,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메스꺼움 등)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발열 시 해열제 복용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기타증상 (구토, 권태감, 설사, 미각, 후각 마비, 메스꺼움 등)							
보호자 확인							

* 호흡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 의심증상이 발견된 학생이 가정에서 매일 자기건강관리를 하는데 활용하며,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으로 제출

2022. . .

전주대정초등학교장

memo

memo

memo

memo

memo